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서관법」(법률 제21745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납본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지식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송할 수 있도록 납본제도를 정비하고,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선정 및 납본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및 납본 부수 조정(안 제15조)

- 1) 납본 대상에 석사·박사학위논문과 웹툰, 웹소설 등 연재형 웹콘텐츠 추가
- 2) 학위논문의 납본 부수 명시 및 조문 정비
- 3) 납본받지 아니할 자료 기준을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공고하도록 함

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 1) 심의위원회 위원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2)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해촉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
-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의3)
- 1)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2)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예정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9. 웹툰, 웹소설 등 연재형 웹콘텐츠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을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파일자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국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관자료의 경우”를 “경우(단, 학위논문은 제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국가등”을 각각 “국가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학위논문의 경우: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납본 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삭 제〉

⑦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납본받지 아니할 자료의 기준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 제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이”를 “제2항제2호의 심의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의 심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나.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⑨ <삭 제>

⑩ <삭 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3(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u>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u> 1. ~ 7. (생략) <u><신 설></u> <u><신 설></u> 8. (생략) ② <u>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u> 1. ~ 3. (생략) ③ <u>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u>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u>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1. ~ 7. (현행과 같음) 8. <u>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u> 9. <u>웹툰, 웹소설 등 연재형 웹콘텐츠</u>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u>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u> ----- ----- <u>한</u> <u>다)의</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u> -----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생략)

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
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나. 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
는 경우: 2부

<신설>

<신설>

-----.

1. 디지털파일자료-----

가. (현행과 같음)

나. -----

-----.

- “국가기관등”-----

---.

2. ----- 경우

(단, 학위논문은 제외)

가. 국가기관등-----

나. 국가기관등 -----

3.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학위
논문의 경우: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5
항에 따라 납본 부수를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서관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

④ (생략)

⑤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⑥ (생략)

<신설>

<신설>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납본받지 아니할 자료의 기준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 제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

----- 심의위원회 -----

-----.

② (생략)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적정 보상금액의 산정

2. 자료의 종류·형태 등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3.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의 심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

2.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나.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
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
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
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
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
으로 한다.

⑥·⑦ (생략)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
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⑨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
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2호-----
-----.
<단서 삭제>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제2항제
2호의 심의위원이 -----

-----.

1. ~ 4. (현행과 같음)

⑨ <삭제>

⑩ <삭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법 제22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3(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연 락 처	(044) 203 - 2618